
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(☎ 044-201-3361)

- ▶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.
-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유기기간,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·임대료 산정 및 임대유기기간동안에는 5%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,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이며,
- 그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·재산세·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·소득세 감면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·개량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,
-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준공공임대주택 도입

<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>

- ▶ 추진배경 :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
- ▶ 주요내용
 - ①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
 - ②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유기기간, 임대료 증액을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,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
- ▶ 시행일 : 2013년 12월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